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94
----------	------

제출년월일 : 2009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학교급식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교급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생 략)</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p> <p>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 · 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 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0조 (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쥐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

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 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 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산물”과 우수수산물 구입비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참고자료

학교급식조례 마련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 제출내용 발췌, 2004.7.22)

③ 급식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근거 >

-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종·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무료급식대상을 취학 전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영유아보육법 소관인 여성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 대상확대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포함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이 아니라 추가 소요재원이 쟁점이 되는 바, 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관계법령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와 여성부(現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다만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문제는 별도 검토사항임.

시·군·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학교급식법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초·중·고,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06. 7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도 조례의 개정 요구

- 지원대상범위를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국·공립, 사립),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함

○ 시·도별 지원대상 범위

지 원 대 상	해 당 지 역
초·중·고	경남
초·중·고, 유치원(병설)	울산
초·중·고, 유치원(국·공·사립)	대구, 충남, 경북
초·중·고, 유치원(국·공·사립), 보육시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충북

⇒ 학교급식법에 의한 지원대상보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확대는 되었으나, 학교급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제천시 공고 제 2009 - 1274호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 9

제 천 시 장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조례명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학교급식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교급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원예유통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25, FAX 641 - 5319 담당자 : 함 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원예유통팀장	농업축산과장			
함미경	박대기	전결 10/30 염두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문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9-1274호
 3. 공고기간 : 2009. 10. 9 ~ 10. 29 (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49인

- 의견제시자 : 학교급식제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영호

입법 예고안	제출 의견	검토 결과
<p>제4조(지원대상)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p> <p>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p>	<p>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제3조 2항 단서조항 신설 건의</p> <p>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②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단, 국공립 학교 이외의 민간인 운영 시설에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한다.</p>	<p>제3조 2항에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고 조례에 명시되어 단서조항은 불필요</p> <p>단,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행운영상 신뢰성 대한 문제점은 추진계획에 의거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p>

증임 : 김고문 1부, “한”

2009. 10. 30

결과보고자 직 행정7급
 성명 행 미경

제천시장 귀하